#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4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 나경원·서천호·강대식

이종배 · 김선교 · 안철수

성일종 • 박수민 • 조경태

이종욱 • 박덕흠 • 김민전

조배숙 • 배준영 • 최보유

김미애 • 박충권 • 박성민

김소희 • 임종득 • 김용태

서지영 · 권영진 · 김종양

최수진 · 강명구 · 김예지

이만희 • 김승수 • 서일준

의원(30인)

# 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 공급망실사법(유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운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 슈가 될 것임.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중견기업 대상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직접 수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대·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안 제1조).
- 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8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0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을 지정함

(안 제11조).

- 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을 규정함(안 제13 조, 제14조).
- 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및 해외 진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 조).
- 자.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시 공무원 의제, 벌금, 양 벌규정,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대응 등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

집등'을 말한다.

- 5.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증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 6.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를 매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 7. "감축 방법론"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8. "인증서 거래계정"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증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축 사업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 9. "탄소중립 혁신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 10.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은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 선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상생협력,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지원에 관한사항
  - 4.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심의·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전담 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위임·위탁 및 제9조제3 항에 따른 위임·위탁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 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이 필요 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체계

- 제8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 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 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평가
  - 2.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지원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전담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이하 "탄소중립 촉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 중 하나에 위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관리·감독
-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 3. 제12조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4.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
-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촉진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 촉 진센터의 운영을 위임·위탁한 전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2.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운영을 위임·위탁받은 전담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설치, 위임·위탁 및 위임·위탁 변경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의 검증 등 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

- 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이하 "검증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위임·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④ 검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업무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업무 기준, 결과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등록

- 2. 검증 업무 수행 결과 검토
- 3. 제13조제6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 4. 그 밖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인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신청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인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결과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장은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축 등록부의 구축 운영
  -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 의 설치·운영
  - 3.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제15조부터 제19 조까지의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활 용
  - 4.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보의 종합제공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 제13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감축 계획 등록 및 감축량 인 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이하 "감축 등록부"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이하 "감축 사업자"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감축 계획서를 작성

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축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축 등록부에 감축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 사업자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감축 사업자는 감축 계획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보고서(이하 "모니 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⑤ 감축 사업자로부터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 기관의 장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축 사업자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검증보고서 등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대한 승인을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승인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축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항 사항 외에 감축 계획서의 검토
   ·승인 및 등록취소,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 인증서의 발급 및 발급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축 사업자
- 2. 중앙행정기관
- 3. 지방자치단체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자는 감축 등록부에 인증서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인증서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인증서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④ 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신고하여 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감축 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인증서 거래에 따른 인증서의 이전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이하 "거래 플랫폼"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의 거래, 거래 계정의 등록, 보유 인증서의 최대 수량, 거래 사실의 신고, 거래 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 제1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1.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투자
  - 3.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 4.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 5. 탄소중립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6조(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의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 2. 탄소중립 혁신기술 실증ㆍ검증
- 3. 탄소중립 혁신기술 이전 · 거래
- 4.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반 창업
- 5. 그 밖에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7조(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공시 등을 위한 배출 현황분석
  - 2.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평가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8조(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 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한 인증서 의 직·간접 수요 창출

- 2.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획, 발굴 등
- 3. 검증기관, 인증기관 등의 역량 강화
- 4.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9조(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금융·투자,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선도중소 기업 확인 및 지원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6장 보칙

- 제2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감축 사업자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감축 사업자
  - 3. 제1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 감축 사업자
  -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5. 제19조제5항에 따라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21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그 밖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 제7장 벌칙

- 제24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 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축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검증기관
  -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인증기관

-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인증기 관
  - 5. 제13조제3항에 따른 감축 등록부에 감축 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하 거나, 감축 사업자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 6.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